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 관련 신규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가사근로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감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가보훈처와의 협업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며,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건설기능인력의 적정 임금 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용정책실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10. ~ 2.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항제7호 중 “지원”을 “지원 및 고용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해 발생”을 “중대산업재해발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항제2호 중 “처리”를 “처리 및 그 밖의 산업 안전보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유해위험작업교육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를 “유해위험작업교육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운영(건설업을 제외한다)

15.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경기·성남·안양·안산·평택 지청은 제외한다)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건설업 제외)

16.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계획 수립·시행

17.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계획,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에 대한 지원

18.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의 재조사·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9.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확인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상태 평가 및 변경·재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제14조제15항제2호 중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를 “제10호까지, 제13호부터 제14의2까지, 제17호 및 제20호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보건진단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을 “안전보건진단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을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9호 및 제12호”를 “제9호, 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제7호 중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건설안전진단기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위촉”을 “위촉·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경기·성남·안양·안산·
평택 지청은 제외한다)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내 건설업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

13.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제6항제3호나목 중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를
“제10호까지, 제13호부터 제14의2까지, 제17호 및 제20호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안전보건진단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및 석면조
사기관”을 “안전보건진단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을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9호 및 제12호”를 “제9호, 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무를 분장하고”를 “사무 및 경기·
성남·안양·안산·평택지청 관할 구역 내 건설업 외 특별감독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를 “제10호까지,
제13호부터 제14의2까지, 제17호 및 제20호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보건진단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을 “안전
보건진단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
안전진단기관”을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9호 및 제12호”를 “제9호, 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기지청 건설산재지도과장은 경기·성남·안양·안산·평택지청 관할 구역 내 건설업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제15조제9항제1호 중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를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안전진단기관”을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5년 2월 28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별표 1 비고 중 “제14조제13항제9호 및 제10호”를 “제14조제14항제18호 및 제19호”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624”를 “629”로 하고, 일반직 계 “617”을 “622”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9”를 “2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17”을 “118”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6”을 “47”로 하고, 행정주사 “64”를 “65”로 하며, 행정주사보 “61”을 “62”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42”를 “647”로 하고, 일반직 계 “635”를 “640”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6”을 “27”로 하고, 행정사무관 “137”을 “138”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6”을 “47”로 하고, 행정주사 “58”을 “59”로 하며, 행정주사보 “54”를 “55”로 한다.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5년 2월 28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본문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계	<u>362</u>	<u>90</u>	<u>272</u>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u>361</u>	<u>89</u>	<u>272</u>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u>49</u>	<u>28</u>	2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 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u>135</u>	26	<u>109</u>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83	11	7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0	3	1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3		3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13	2	11

[별표 13]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계	<u>366</u>	<u>94</u>	<u>272</u>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u>365</u>	<u>93</u>	<u>272</u>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u>49</u>	<u>28</u>	2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 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u>136</u>	28	<u>108</u>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82	11	7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4	4	20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5	1	4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11	2	9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고용정책실) ① ~ ⑩ (생략)	제6조(고용정책실)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고용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민간 직업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u>지원</u>	7. ----- -- <u>지원 및 고용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u>
8. ~ 15. (생략)	8. ~ 15. (현행과 같음)
⑫ ~ ⑮ (생략)	⑫ ~ ⑮ (현행과 같음)
<16> 고용서비스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u>고용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u>	<u><삭 제></u>
11. · 12. (생략)	11. · 12. (현행과 같음)
⑯ ~ ⑲ (생략)	⑯ ~ ⑲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 ⑫ (생략)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
1. <u>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소속 지청(경기 · 성남 · 안양</u>	<u><삭 제></u>

· <u>안산·평택 지청은 제외한다</u>) 및 <u>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 <u>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u> 2. (생략) 3. <u>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계획 수립·시행</u> 4. ~ 5의2. (생략) 6. <u>재해발생 총괄 상황파악, 분석 및 관리</u> 7. (생략) 8. <u>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계획,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에 대한 지원</u> 9. <u>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의 재해조사·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u> 10. <u>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확인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상태 평가 및 변경·재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항</u>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5의2. (현행과 같음) 6. <u>중대산업재해발생</u> ----- 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	---

11.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청 관
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
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산업안
전보건에 관한 사항

⑭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산재예
방지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다만, 건설산재지도과장
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
항은 제외한다.

1. (생 략)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
장소에 걸친 「산업안전보건
법」의 위반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3. ~ 10. (생 략)

11.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
강진단기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
기관, 유해위험작업교육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
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가·허가·승인·확인·지
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삭 제>

⑭ -----

----. -----

-----.

1. (현행과 같음)

2. -----

----- 처리 및 그 밖
의 산업안전보건-----
--

3. ~ 10. (현행과 같음)

11. -----

----- 유해위험작업교육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12.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생략)

1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건설업을 제외한다)·운영

14의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삭제>

13. (현행과 같음)

1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운영(건설업을 제외한다)

14의2. (현행과 같음)

15.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지청(경기·성남·안양·안산·평택지청은 제외한다)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건설업 제외)

16.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내 둘 이상의 소속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계획 수립·시행

17.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계획,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에 대한 지원

18.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의 재해조사·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9.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

15. (생략)

⑮ 제주산재예방지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산재예방지도팀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1. 제13항제4호, 제5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2. 제14항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3. 제14항제11호의 사항 중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자율안전

서의 심사·확인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상태 평가 및 변경·재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항

20. (현행 제15호와 같음)

⑮ -----

-----.

-----.

1. 제1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 제10호까지, 제13호부터 제14의2까지, 제17호 및 제20호에 관한 -----

3. -----

안전보건진단기관 및 자율안

<u>검사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u>	<u>전검사기관</u>-----
4. 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u>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u>을 제외한 사항	4. ----- <u>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u>-----
5. 제16항제8호, <u>제9호 및 제12호</u>에 관한 사항	5. ----- <u>제9호, 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u>-----
<16> 건설산재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6의2. (생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7.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u>건설안전진단기관 및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가·허가·승인·확인·지정 및 등록</u>에 관한 사항	7. ----- <u>건설안전진단기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u>-----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u>위촉</u>	11. ----- <u>위촉·운영</u>
<u><신설></u>	1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소속 지청(경기·성남·안양·안산·평택 지청은 제외한다)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내 건설업 특별감독 및 결

<신 설>

12. (생략)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 ⑤ (생략)

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및 근로개선지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지청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강남·경기·성남·창원·울산·천안 지청의 근로개선지도과장은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1. · 2. (생략)

3. 산재예방지도과 및 산재예방
지도팀을 두지 않는 지청 및
출장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청 및 출장소
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과조치

13.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1. · 2. (현행과 같음)

3. _____

사항 가. (생 략) 나. 제14조제14항제1호, 제3호부터 <u>제10호까지</u> 및 제12호부터 <u>제15호까지</u>의 사항 다. 제14조제14항제11호의 사항 중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u>안전보건진단기관</u>, <u>자율안전검사기관</u> 및 <u>석면조사기관</u>을 제외한 사항 라. 제14조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u>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u> 및 <u>건설안전진단기관</u>을 제외한 사항 마. 제14조제16항제8호, <u>제9호</u> 및 <u>제12호</u>에 관한 사항 ⑦ (생 략) ⑧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산재예방지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지청의 산재예	-- 가. (현행과 같음) 나. ----- ----- <u>제10호까지</u>, <u>제13호</u>부터 <u>제14의2까지</u>, <u>제17호</u> 및 <u>제20호에 관한</u> ----- -- 다. ----- ----- ----- ----- <u>안전보건진단기관</u> 및 <u>자율안전검사기관</u>----- --- 라. ----- --- <u>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u>, <u>건설안전진단기관</u> 및 <u>석면조사기관</u>----- ----- 마. ----- <u>제9호</u>, <u>제11호</u>, <u>제13호</u> 및 <u>제14호</u>-----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

방지도과장은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하고, 의정부·경기·성남·울산·포항·전주·천안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건설산재지도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하며, 강원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강원·강릉·원주·태백지청 및 영월출장소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제14조제13항제4호, 제5호 및 제5호의2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1. 제14조제13항제8호의 사항
2. 제14조제14항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3. 제14조제14항제11호의 사항 중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4. 제14조제16항제7호의 사항

----- 사무 및 경기·성남·안양·안산·평택지청 관할 구역 내 건설업 외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

<삭 제>

2. -----
-- 제10호까지, 제13호부터 제14의2까지, 제17호 및 제20호에 관한 -----
3. -----

-- 안전보건진단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4. -----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u>건설안전진단기관</u>을 제외한 사항	----- <u>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u>----- --
5. 제14조제16항제8호, <u>제9호 및 제12호</u>에 관한 사항	5. ----- <u>제9호, 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u>----- -----
⑨ 건설산재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단서 신설>	⑨ ----- ----- . 다만, <u>경기지청 건설산재지도과장은 경기·성남·안양·안산·평택지청</u> 관할 구역 내 건설업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 분장한다.
1. 제14조제16항제1호, 제3호부터 <u>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u>의 사항	1. ----- -- <u>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u>----- -----
2. 제14조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u>건설안전진단기관</u>을 제외한 사항	2. ----- ----- <u>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u>----- --
제28조(한시정원) ① <u>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u>	제28조(한시정원) <삭 제>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⑥ 건설기능인력의 적정 임금 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⑦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감축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2025년 2월 28일 -----

-----.

<삭 제>

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
용노동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
원 1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
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으로 충원해야 한다.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24</u>	<u>629</u>	+5
·	·	·	
·	·	·	
일반직 계	<u>617</u>	<u>622</u>	+5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19</u>	<u>20</u>	+1
·	·	·	
·	·	·	
행정사무관	<u>117</u>	<u>118</u>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	<u>46</u>	<u>47</u>	+1
·	·	·	
·	·	·	
행정주사	<u>64</u>	<u>65</u>	+1
·	·	·	

• 행정주사보 • •	• <u>61</u> • •	• <u>62</u> • •	+1
---	---	---	-----------

[별표 6]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42</u>	<u>647</u>	+5
·	·	·	
·	·	·	
일반직 계	<u>635</u>	<u>640</u>	+5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26</u>	<u>27</u>	+1
·	·	·	
·	·	·	
행정사무관	<u>137</u>	<u>138</u>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	<u>46</u>	<u>47</u>	+1
·	·	·	
·	·	·	
행정주사	<u>58</u>	<u>59</u>	+1
·	·	·	
·	·	·	

행정주사보	<u>54</u>	<u>55</u>	+1
.	.	.	
.	.	.	